

「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 
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 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10월 8일

나. 발 의 자: 김근한 의원 (1인)

다. 찬 성 자: 강승수, 김낙관, 김민성, 김원섭, 김재우,  
김춘남, 소진혁, 신용하, 양진오, 장미경,  
정지원 의원 (11인)

라. 회부일자: 2024년 10월 10일

마. 상정일자: 2024년 10월 17일

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근 한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의원연구단체의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을 더 하고 차년도 사전 운영계획의 수립과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

지에 공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연구단체 활동이 되도록 하며, 연구활동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민간 전문가 위원 위촉 가능 단서 규정 신설 (안 제4조제3항)
-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의 수립 (안 제9조제2항)
-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온라인 공개 규정 신설 (안 제11조제4항)
- 의원연구단체 활동비 부당사용 시 환수규정 마련 (안 제12조제5항)

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(안)으로 제안된 것으로,
-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 외부위원으로서 민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여 용역과제 추진의 필요성, 타당성, 예산의 적정성 등 전문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됨에 그에 따라 더욱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, 의원연구단체 운영계획을 사전에 수립함으로써 차년도 의원연구단체 지원시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가

능할 것으로 보이며,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구미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결과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,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- 마지막으로, 연구활동비는 정책연구용역 수행,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간담회 등 연구활동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 목적 외 사용 등 부당 사용 시 환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타당하며 해당 조항의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수정가결